

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20. 2. 6.

기획 행정 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기획조정실장)
- 제출일자: 2020. 1. 23.
- 회부일자: 2020. 1. 23.
- 상정 및 의결: 제268회 달서구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0. 2. 6.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 제30018호)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나. 제정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(관련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7조, 제10조, 제13조
-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-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동의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정온주 전문위원)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(대통령령)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- 검토결과
 -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·우대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, 관계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 - 또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 본 조례 제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: 특이사항 없음

6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